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원이 · 신영대 · 위성곤

서미화 · 남인순 · 서영석

김한규 · 박지원 · 김선민

민형배 · 신정훈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강사료·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 나.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강사료·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업체 및 관련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더목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

- 너.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 협의회"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강사료·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 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 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 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 부행위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	<u>.</u>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1
행위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u><신 설></u>	너. 정당[「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이하 "당원협의회"라 한
	다)를 포함한다]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
	(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
	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신 설>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① 정당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 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 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配偶者의 直系算・ 卑屬과 兄弟姉妹, 候補者의 直 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 舉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對談・討論者나 候補者 또는 그 家族(家族의 범위는 第10條 | 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행사기획비・강사료・숙식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당 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 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

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 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 있는 會社 그 밖의 法人·團體 (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 는 그 任・職員은 선거기간전 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 期間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 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을 위하여 일체의 寄 附行爲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 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 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 은 당해 選舉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

② (생략)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 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 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 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 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 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 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 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